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(안 제61조의3, 제61조의4, 제62조의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('20.4.29)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건축자재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·유통·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성능 미달 자재 생산·유통 및 부실시공을 근절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자재의 성능 확인뿐 아니라, 공장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, 매년 제조 · 유통 · 시공 현장을 품질인정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질인정제도 도입.
-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 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,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.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제조, 유통, 시공 현장 등에 대한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통하여 불법건축자재 근절 및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